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의미에 관한 고찰

(A Research about the Meaning of Status that ‘the Insured can not be a Free Decision-Making, such as Loss of Physical and Mental’)

조규성*

Gyuseong, Cho

<국문초록>

2010. 1. 29. 약관의 개정으로 ‘생명보험표준약관’ 과 ‘질병·상해보험표준약관’ 공히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에는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면서도 면책 예외사유로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에는 예외적으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손해사정실무상에서는 전자를 ‘자살(自殺)’ 로, 후자를 ‘자사(自死)’ 라는 표현으로 구분해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손해사정실무에서는 여전히 ‘자사(自死)’ 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련된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례에 대해 살펴보고, ‘자사(自死)’ 의 인정과 관련된 합리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나아가 대법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살’ 의 판단기준인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性行), 자살자의 신

* 법학박사(보험법 전공), 제3종 대인 손해사정사, 협성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교수
투고일: 2015. 12. 11. 심사일: 2016. 01. 05. 게재확정일: 2016. 02. 18.

체적·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과 관련해서 손해사정실무에서 ‘자살’과 ‘자사’의 판단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는 “피보험자의 경제상황의 악화, 피보험자가 경영하는 회사의 상태의 악화 등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보험금을 취득시킨다는 동기가 존재하는지 여부, 피보험자 및 그 친족의 병고, 실직, 일이나 취학 등의 고민, 가정불화, 실연, 스캔들의 발각 등 고민의 유무, ‘유서의 존재’나 ‘신변정리의 흔적’ 등 판례를 통해 드러난 구체적인 판단기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의미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이 정립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국문 주제어 : 대법원 판례, 보험자의 면책, 상해보험, 자살면책조항, 우연성, 보험약관, 정신질환과 자살, 심신상실

I. 들어가는 말

2010. 1. 29. 약관의 개정으로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생명보험표준약관’과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질병·상해보험표준약관’ 공히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면서도 면책 예외사유로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손해사정실무상에서는 전자를 ‘자살(自殺)’로, 후자를 ‘자사(自死)’라는 표현으로 구분해서 판단하고 있다.

약관의 개정 전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했던 상해보험은 ‘장기손해보험표준약관’이란 이름으로 계약 체결이 이루어졌고, 동 약관에서는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심신상실로 생긴 손해와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손해”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동 면책조항은 개정 후 약관에서는 삭제되었고, 현재는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사유로 개정되었음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문제는 개정 약관에서도 여전히 피보험자의 사망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손해사정실무에서는 많은 다툼이 생기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고의사고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자살(自殺)’과 면책예외 사유인 ‘자사(自死)’와 관련해서 손해사정실무에서 생기고 있는 해석의 다툼과 어떤 경우에 ‘자사(自死)’의 대표적인 사례인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해당되어 보험자의 보상책임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례에 대해 살펴보고, ‘자사(自死)’의 인정여부와 관련된 합리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자살’에 대하여

1. 고의 사고인 ‘자살’의 의미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¹⁾

즉 ‘자살’이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사리를 분별할 수 없는 정신장애자의 ‘자살’이나 심신상실 중의 ‘자살’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 등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의식 자체를 결여하고 있으므로 ‘자살’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단순히 사망이라는 결과의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에 사형의 집행이나 중과실에 의한 사망도 ‘자살’로 볼 수 없다.²⁾³⁾

아울러 약관상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라 함은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행하는 심리상태를 말한다.⁴⁾ 여기에는 확정적 고의는 물론 미필적 고의도 포함되며,⁵⁾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는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
- 1)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766696 판결 등 참조.
 - 2) 유주선, “보험자의 면책과 생명보험표준약관상 자살부책조항”, 경영법률(제18권 제1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07, 326면.
 - 3) 자살의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직접 자신의 손으로 자기의 생명을 끊는 경우로 한정하지 않고, 촉탁 살인과 같이 타인에게 의뢰하여 자신을 죽이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본다. 즉 촉탁살인이 형법상 범죄이고, 일반적인 자살에 비해 반사회성이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보험자 스스로가 자신의 목숨을 끊는 자살 자체도 공서양속에 반하고 반사회성을 띠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으므로 촉탁살인에 의해서 자살한 경우에도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같은 의견, 송달섭, “생명보험표준약관상의 자살면책조항에 관한 소고”, 기업법연구(제21권 제2호), 한국기업법학회, 2007, 264면.
 - 4)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31401 판결 등 참조.
 - 5)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장덕조, 보험법(제2판), 법문사, 2015, 152면.

나아가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해서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⁶⁾

2. 고의사고인 자살에 대한 면책취지

고의에 의한 사고를 면책으로 하고 있는 취지는 피보험자가 고의에 의하여 보험사고를 일으키는 것은 보험계약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한다면 보험계약이 보험금 취득 등 부당한 목적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⁷⁾

Ⅲ. 판례의 검토

1. 보험회사의 면책을 부정한 사례

(1) 서울중앙지법 2009. 6. 17. 선고 2008가합73620 판결

1) 보험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이유

① 망인이 중증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계속 통원치료를 받아왔으나, 사망 무렵 증세가 종전보다 더욱 심각해진 점, ② 특히 사망하기 약 한달 전부터 망인은 심한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신도 모르게 어떤 행동을 취하고 그러한 행동을 취한 것에 대해 전혀 기억을 못하는 해리성 장애 증세를 수차례 보였고, 사망 당일도 해리성 장애 증세로 인하여 광주까지 가게 된 점, ③ 망인의

6)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7) 대법원 2006.3.10. 선고 2005다49713 판결 등 참조.

직업, 지위,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망인이 특별히 자살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망인이 유서를 작성하거나 달리 신변정리를 한 흔적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망인은 미리 자살을 계획하거나 준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망인을 계속 치료해 온 주치의도 망인의 증상에 비추어 사망 당시 망인은 자신의 의지와 행동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였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을 판시 이유에서 들고 있다.

2) 결론

망인은 해리성 장애 증세 등의 극심한 정신질환으로 심신을 상실한 나머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농약을 마셔 사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재해의 하나로 정한 ‘유독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해당한다(밀줄 필자)고 할 것이므로 보험회사는 유족들에게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2) 울산지법 2014. 9. 17. 선고 2013가합8614, 2014가합3173(반소) 판결⁸⁾

1) 보험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이유

① 망인은 운영하던 어린이집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벌금 4천만원을 납부하게 되자 이로 인한 자책감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이상이 발생하였고, 이후 이러한 정신질환이 점차 심화되어 자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이 딸과 함께 죽으려고 시도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 가족이 옆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을 맨 것에 비추어 불 때 정신질환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였다고 보이는 점, ③ 망인이 아무런 유서도 남기지 않고 자살한 것에 비추어 불 때 고의적인 자살이라기보다는 정신적 문제로 인한 우발적 자살로 보이는 점 등을 판시 이유에서 들고 있다.

8) 현재 항소기각 후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2) 결론

망인이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이 사건 약관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는 ‘고의’로 즉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보험사고를 일으켰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망인은 중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목을 매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상해로 인한 사망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 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자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전주지법 2014. 9. 2. 선고 2013나11501 판결

1) 보험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이유

① 망인은 불우한 가정환경 등으로 우울증이 발병하여 2011. 7. 경부터 같은 해 9. 경까지 서울에 있는 성모이음 정신과의원에서 우울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② 망인이 서울에 있는 M중학교에서로 우울증 등으로 학교생활을 하지 못하여 군산시에 있는 H중학교로 전학하였는데 그 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2011. 11. 15. 경부터 서울 국립의료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오다가 2011. 12. 30. 퇴원한 사실, ③ 망인이 국립의료원에서 퇴원한 후 H중학교 졸업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군산시에 내려왔다가 2012. 1. 5. 투신하여 사망에 이른 사실 등을 판시 이유에서 들고 있다.

2) 결론

위와 같은 망인의 나이와 성행, 자살에 즈음한 망인의 상태, 망인의 가정상황, 망인이 우울증으로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퇴원한지 불과 6일 만에 위와 같이 투신한 점 등을 모아보면, 망인은 우울증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4) 부산지법 2013. 2. 6. 선고 2012가합13043, 21167(반소) 판결

1) 보험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이유

망인이 샤워부스 봉에 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한 사실은 맞지만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①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미혼이었고 26세의 나이에 유흥업소에서 일하고 있었던 사실, ② 망인과 15년 이상 알고 지내면서 이 사건 사고 2달 전부터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동거하였던 A가 2012. 5. 6. 저녁 반팔티와 팬티만 입은 채로 욕실샤워부스 봉에 허리띠로 목을 매는 방법으로 목숨을 끊은 사실, ③ 망인은 A의 사망 직전까지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들었는데 잠에서 깨어 욕실에서 목을 매어 사망한 A를 발견하게 된 사실, ④ 망인의 오빠가 A의 사망에 관한 경찰조사를 받은 망인을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 망인이 ‘B가 기다린다’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말을 반복한 사실, ⑤ 망인이 2012. 5. 7. 17:30 경 이 사건 사고 장소로 가 A와 동일한 방법으로 목숨을 끊은 사실, ⑥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유서를 남기지 않은 사실, ⑦ 망인의 언니는 2012. 5. 12. 결혼한 사실, ⑧ 망인은 2010. 3. 경부터 불면증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2012. 4. 14. 에는 우울증 증상으로 약물치료 및 정신치료까지 받았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수면제를 1회 5알정도 복용하고 있었던 사실, ⑨ 망인은 이 사건 1여년 전 피고에게 ‘미안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는 전화통화 중 말없이 울기만 한 적이 있었고 평소 힘들어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서 ⑩ 함께 살면서 사망 직전까지 같이 술을 마셨던 친구의 자살 직후 시신을 최초로 발견한 경우 일반인도 심한 정신적 충격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장기간 불면증 치료를 받으면서 우울증 소견까지 보인 망인의 경우 이러한 정신적 충격은 더욱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⑪ 망인이 사망한 A를 발견하고 하루도 지나지 않아 A와 동일한 방법과 옷차림으로 목숨을 끊은 것만 보더라도 A의 사망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이 사건 사고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⑫ 언니의 결혼식을 불과 며칠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원인 없이 의도적으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⑬ 과거 자살을 생각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사고를 의도적인 자살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판시 이유에서 들고 있다.

2) 결론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보험회사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상 보험금 지급채무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5) 서울중앙지법 2015. 2. 11. 선고 2013가단196970 판결

1) 보험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이유

① 망인이 오랫동안 앓아 온 극심한 우울증으로 육체까지 쇠약해진 상태였고, 자살 전날 자신의 외도 문제로 처와 격한 부부 싸움을 하여 극도의 정신적 불안상태까지 이르게 된 점, ②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결과에 의하더라도 망인은 자살 당시 자기 행위의 의미와 행동을 이해하고 논리적 추론으로 결정한 것이 아닌 질병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등을 판시 이유에서 들고 있다.

2) 결론

이 사건 자살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6) 대법원의 대표적 판결

① 부부싸움 중 극도의 흥분되고 불안한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베란다 밖으로 몸을 던져 사망한 경우⁹⁾ 및 ②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술에 취한 나머지

9)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 판결.

판단능력이 극히 저하된 상태에서 신병을 비판하는 낯두리를 하고 베란다에서 뛰어내린다는 등의 객기를 부리다가 마침내 음주로 인한 병적인 명정으로 인하여 심신을 상실한 나머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베란다에 뛰어내려 사망한 사안¹⁰⁾ 등에 있어서 해당 사고들은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발생한 우연한 사고라고 판단하였다.

2. 보험회사의 면책을 인정한 사례

(1) 부산지법 2009. 1. 21. 선고 2008가합20129 판결

1) 보험회사의 책임을 부인한 이유

망인의 우울증은 2008. 3.경부터 4. 초순경까지는 소량의 약물 처방만 받을 정도로 같은 해 2월 말경부터 그 증상이 많이 완화되었으며, 그 무렵 담당의 사에게도 심리적 어려움은 토로하지 아니한 점, ② 사망 전날 남편과 사이에서 있었던 약간의 언쟁 등이 그 다음날인 사망 당일 아침에 이르기까지 소외인에게 극도의 흥분된 상태나 정신적 공황상태를 야기 또는 지속시켰던 것으로 보기가 어려운 점, ③ 아들의 따돌림 문제 외에는 부부 사이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더구나 사망 당일 아침에는 소외인의 흥분상태를 유발할 만한 다른 상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판시 이유에서 들고 있다.

2) 결론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망인이 우울증 또는 그와 결합된 극도의 흥분상태에서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림으로써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망의 결과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 2011.4.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10)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76696 판결.

1) 보험회사의 책임을 부인한 이유

① 망인은 꼼꼼하고 과묵한 성격으로 원고 1과의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있으며, 이 사건 자살행위 당시 가정이나 직장에서 별다른 어려움은 없었고, ② 2007년도에도 연가 3일을 사용한 것 이외에는 모두 정상 근무해온 사실, ③ 망인은 종전에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2006년 정기 건강검진 당시 문진표에 “지난 한 달 동안 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감당하기 힘들다고 느낀 적은 없었다”고 기재한 사실, ④ 망인은 2007. 6. 11. 사무실에 전화하여 ‘몸이 불편하여 하루 병가를 내겠다’고 병가를 신청한 다음, 혼자서 병원을 찾아가 정신질환 진단에 필요한 질문서의 답변 항목에 일일이 체크하고, 담당 의사에게 불안, 의욕저하 등을 호소하면서 직장을 쉬기 위해서는 진단서가 필요하다면서 진단서를 거듭 요구하여 병명 ‘우울성 에피소드’로 된 진단서를 발급 받은 사실, ⑤ 망인이 손위 동서에게 남긴 유서에는 사무실에 있는 자신의 짐을 모두 없애고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도 삭제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던 사실 등을 판시 이유에서 들고 있다.

2) 결론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망인이 자살 당일 우울성 에피소드의 진단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 발병 시기가 그다지 오래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망인의 나이, 평소 성격, 가정환경, 자살행위 당일 행적, 망인이 자살하기 전에 남긴 유서의 내용과 그로부터 짐작할 수 있는 망인의 심리상태, 자살행위의 시기와 장소, 방법 등에 비추어, 망인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3) 서울고법 2011. 6. 16. 선고 2011나6702, 6719 판결

1) 보험회사의 책임을 부인한 이유

① 망인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입은 뇌경색으로 인하여 뇌혈관질환에 의한 기

분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사망 전까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던 망인이 사고 당시 망인에게 극도의 흥분상태 내지 정신적 공황상태를 야기할 만한 상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② 망인은 뇌경색 진단 이후 신경외과 치료를 받아왔으나 따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우울증 등의 진단을 받은 바 없는 점, ③ 망인이 사고 당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서랍에서 무기고 열쇠를 찾아 이중으로 잠긴 무기고를 열고 권총에 실탄을 장전하여 꺼낸 후 열쇠를 다시 제자리에 가져다 놓았던 점에 비추어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망인이 사망하기 얼마 전 근무지를 이탈하여 원고를 찾아가서 목을 조른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극도의 흥분상태가 이 사건 자살당시까지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자살충동을 우울장애의 정신병리에 의해 피동적으로 생겨나는 것으로 보아 모든 자살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한다면 자살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면책사유로 규정할 아무런 실익이 없는 점 등을 판시 이유에서 들고 있다.

2) 결론

망인의 자살이 사고 당시 자살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심리적 우울 상태를 넘어 우울증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미약하게 된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4)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40334 판결¹¹⁾

1) 보험회사의 책임을 부인한 이유

○○생명보험 설계사로 근무하다 2003. 7. 11. 직원들과 회식 후 술에 취하자 남편을 불러 집에 돌아온 후 남편이 주차를 하러 간 사이 집을 나가 가출 신고 5일 만에 ○○천 다리 보 사이에 끼인 상태에서 사체로 발견된 사안으로

11) 대법원에서는 상고기각 된 판결로 제1심인 대전지법 2003가합81663 판결에서 원고인 유족들이 패소하였고,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 2005나2019 판결 역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망인이 만취상태에서 실족하여 물에 빠졌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으로 법원은 ① 망인이 사망할 무렵 보험모집업무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던 점, ② 2000. 3. 29.부터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132회에 걸쳐서 불안신경증, 감정부전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2002. 7.경에는 기도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우울증을 심하게 앓았으며 사망 3일 전인 2003. 7. 8.에도 의사로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 ③ 평소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한 점, ④ 사망하기 직전 휴대전화기로 자신의 주변인들인 동생들과 딸, 직장 상사, 조카 및 친분이 있던 지인 등에게 전화를 걸어 마지막으로 인간관계를 정리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배우자와 지인에게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을 하였고, 특히 배우자와의 통화 내용에 비추어 그때 이미 자신이 죽을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그 후 약 30여 분간 계속해서 자신의 주변인물들에게 전화를 하였고 마지막으로 지인에게는 물이 목까지 찼다고 말하여 그때는 이미 죽음이 임박한 상황이었음에도 고맙다는 말을 하는 등 위 30분간 통화하면서 구조요청을 전혀 하지 않은 점, ⑥ 망인이 위 보를 지날 무렵에는 인근 주점들이 영업을 하고 있을 시간이어서 주변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두웠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⑦ 위와 같이 자신의 주변인물들에게 차례로 통화를 한 사실과 그 통화내용에 비추어 망인이 실족할 정도로 술에 만취되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⑧ 위 콘크리트 보는 주거지로부터 200여 미터나 떨어져 있고, 평소 망인이 잘 다니지도 않는 곳인데 일부러 그곳으로 간 점, ⑨ 위 통화 당시 망인의 음성과 억양은 급박한 사고를 당하여 죽을 지도 모르는 위기에 놓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흥분, 당황, 두려움 등의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진지하고 차분한 것이었던 점, ⑩ 망인이 실족하여 보 아래로 떨어져 급류에 휩쓸려 방축 밑으로 들어가 몸이 끼이게 되었다면 그 과정에서나 또는 끼인 몸을 빼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신체에 외상이 발생할 것인데도 망인의 사체에는 그와 같이 불 만한 특별한 외상이 없는 점 등을 판시 이유에서 들고 있다.

2) 결론

망인은 장기간 우울증을 앓아온 데다가 평소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죽고

싶다는 말은 자주 해오던 중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살 충동을 느껴 자살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5) 서울중앙지법 2015. 1. 21. 선고 2014가합52933 판결

1) 보험회사의 책임을 부인한 이유

① 망인이 주거지가 아니라 주민 센터 남자화장실에서 자살한 점, ② 자살 장소나 방법 등을 보아 갑작스러운 것이라기보다는 의도적, 계획적인 성격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은 사망한 때로부터 12년 전 업무 중 사고로 입원치료를 받은 후 별다른 직업 없이 가사 일을 해왔던 점, ④ 매일 술을 마시고 폭력을 행사하여 치료부터 이혼을 요구받았고 사망 1달 전에 가출하여 노숙하다 1주일 전 돈이 없어 집에 왔으나 환영받지 못하고 다시 집을 나갔던 점, ⑤ 장기간 실직 상태에서 음주, 폭행으로 인하여 가족들로부터 홀대를 받아온 점 등을 판시 이유에서 들고 있다.

2) 결론

비록 사고 당시 혈중 알콜 농도가 0.259%에 이른다고 해도 망인이 사망 전 상당기간 동안 거의 매일 술을 마신 점에 비추어 그것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6) 대구지법 2009. 9. 9. 선고 2008가단51035 판결

1) 보험회사의 책임을 부인한 이유

망인이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야산에 가서 끈으로 목을 매어 사망한 사안으로 비록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왔다 하더라도 업무상 스트레스와 우울장애 등으로 괴로워하다가 사전에 계획을 세워 사망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결과를 스스로 용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점 등을 판시 이유에서 들고 있다.

2) 결론

망인의 사망은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인 ‘재해’로 인한 사망이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사고는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의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7) 대구지법 2015. 6. 5. 선고 2014가합207188 판결

1) 보험회사의 책임을 부인한 이유

망인이 아파트 베란다 난간(7층)에서 화단으로 떨어져 추락에 의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한 사안에 대해 ① 불교 신자인 망인이 과거 자살을 하면 저승에 못 간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는 사실, ② 망인은 평소 운동을 열심히 하고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는 편이었고, ③ 어떠한 행동을 순간 격한 감정에 우발적으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당시 행위자가 자신의 행동의 객관적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였다거나 그 행동이 행위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평가할 수는 없는 점, ④ 부부싸움을 하던 중 베란다 밖으로 몸을 던져 자살을 한 경우, 일응 그 자살이 부부싸움 중 극도의 흥분되고 불안한 정신적 공황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경험칙상 정형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로 입증의 용이함이라는 면에서도 피보험자 측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합당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보험금 청구권자인 원고가 최초 경찰조사에서의 진술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사망 당시 극도의 흥분되고 불안한 정신적 공황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판시 이유에서 들고 있다.

2) 결론

위 인정사실 만으로는 이 사건 사망이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결과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① 망인과 원고 부부사이에 불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망인에게 자살의 동기가 전혀 없었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② 망인은 평소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특별한 정신질환을 겪고 있지도 않은 점, ③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혈액에서 별다른 약물반응이 나오지 않았고, 혈중 알콜 농도가 0.01% 미만으로 측정되었는바, 망인이 자살을 할 당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약물이나 술에 취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들어 망인의 사망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3. 판단

이상에서 살펴본 법원의 판결례를 보면, 피보험자의 사망이 ‘자살’ 인지 ‘자사’ 인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주요한 판단기준은 통상 피보험자가 사망 전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망의 결과와 그로 인한 가족들 및 주변상황의 변화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거나 예측하지 못할 정도의 극도의 흥분상태나 정신적 공황상태” 또는 “자신의 의지와 행동을 통제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병적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는지 여부를 가지고 “심신상실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자살’ 임에도 불구하고 심신상실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이유로 보험자의 책임을 인정한 경우는 “① 대체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의 정도가 심하였거나, ② 자살 이전에 비정상적인 언행을 보인 적이 있고, ③ 유서를 남기지 않는 등 계획적·의도적 자살이라고 볼 근거가 부족한 경우로 유형화 할 수 있다.

하지만 일관된 판단기준을 도출하기는 어렵고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Ⅶ.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대하여

1. 의사무능력 상태에서의 자사(自死)

(1) 의의

자기의 행위의 시비선악(是非善惡)과 사리를 분별할 수 없는 현저한 정신장애자나 심신상실자와 같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의사 그 자체를 결하고 있으므로 ‘자살’이라고 할 수 없다. 피보험자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자기파괴는 법률적 의미에서는 ‘자살’이라고 할 수 없으며 그것은 ‘자사’에 불과하다.

그런데 ‘자살’에서 배제되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 피보험자의 정신질환 등이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면책사유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문제가 된다. 대개 ‘자살’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비정상적, 병적인 요소가 있으므로 거기에는 무엇인가의 정신적인 변조가 보이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까지 생각된다.¹²⁾

일반적인 정신병 등의 질환은 자살의 동기에 불과하고 의사결정 그 자체와 동기는 구분되어야 한다. 따라서 고의의 ‘자살’로부터 제외하여야 할 정신장애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행한 ‘자사’라는 것은 심신상실 내지 이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정도의 현저한 정신장애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야 한다.¹³⁾

왜냐하면 그러한 상태에서만 자유의사가 전적으로 결여되기 때문이다. 만일 이와 같이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으면 고의성에 의문이 있는 단순한 정신질환 치료경력만으로 피보험자가 ‘자사(自死)’하였다는 주장을 통하여 사망보험금

12) 모든 정신과적 질환은 자살이나 자해의 염려가 있다.; 김광일, “장해감정의 실제적 문제들”, 신경정신의학(제32권 제2호), 대한신경정신의학회, 1993, 144면.

13) 심신상실이란 정상적인 예지력 등에 의하여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고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은 완전한 의식상실을 뜻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리상 심신상실이 정신질환보다 엄격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유관우·이현열, 조문별 인보험 약관해설, 도서출판 엘림지앤피, 2006, 290면.

청구를 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질환은 ‘자살’의 동기에 불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 심신상실의 의미

심신상실이란 “연령적인 미숙과 관계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로 무의식 상태 또는 정상적인 판단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로서 법률상의 책임을 변식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사리판단조차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상태는 정신병에 의하여 생기는 것이 일반적이겠지만 그 외에 고열, 마취, 간질의 발작, 음주, 최면술 등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다.¹⁴⁾

그리고 법률상 심신상실이란 “심신장애로 사물에 대한 변별력이 없거나 의사를 전혀 결정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심신상실의 요인으로는 정신병이나 정신지체(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나 중증의 심신장애적 이상 등을 들 수 있는데, 심신상실로 인해 사물에 대한 식별력과 의사 결정력이 있는지의 여부는 전문가의 도움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이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법관의 재량이므로 심신상실은 의학상의 개념이 아니라 법률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심신상실 상태였는지 여부는 의학상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감정을 토대로 법관이 결정해야 할 법적·규범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2. 생명보험 표준약관의 변천

구분	약관 규정
2005. 4. 1. 이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010. 4. 1. 이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 ¹⁵⁾
2010. 4. 1. 이후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¹⁶⁾

14) 한국사법행정학회, 주해민법(제3판), 2007, 366면.

15) 과거 생명보험 약관에서 정신질환이라는 문언만을 사용하여 자사의 개념을 정하고 있었으나 그 문언의 불명확성과 포괄성으로 인하여 가벼운 정신질환 치료경력을 들어 자살이 아니라는 보험계약자측의 주장이 급증하여 그 부작용이 적지 않았고 그와 같은 불합리한 점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의 문언으로 개정하였다.

판례는 정신질환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성이 있고 또한 격심한 육체적 고통의 압박으로 ‘자살’ 한 경우에는 의사무능력상태에서의 ‘자사’와 마찬가지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생명보험표준약관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¹⁷⁾

물론 자살행위는 법률행위도 범죄행위도 아니므로 능력자와 무능력자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 비교적 그 증상이 미미한 정신질환자도 자신을 해칠 당시에 발작적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질 수도 있다. 또한 현저한 정신질환자나 심신상실자도 일시적으로 자신의 자유의사에 의한 동작에 의하여 생명을 끊은 것이라면 그것은 역시 ‘자살’로 된다. 그리고 의사무능력상태에서의 ‘자사’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 반드시 자신을 해치기 전에 정신질환 치료를 받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해칠 당시에 의식이 파괴된 상태에 있으면 충분하기 때문이다.¹⁸⁾ 결국 피보험자가 자신을 해칠 당시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의사가 흡결된 상태에 있었다면 ‘자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자살’의 경우에 의사결정과 동기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구별한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자살행위의 순간에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던 경우만을 면책사유로부터 제외하게 되고 이는 입증책임의 문제와도 얽혀져 면책의 범위를 확대할 우려도 있다.

설령 동기에 그치는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강력할 때는 의사결정에 관하여 이미 자유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¹⁹⁾

미국에서는 ‘자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현저한 정신질환에 의한 ‘자사’는 이에 반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여타의 사망과 마찬가지로 담보되는 위

16)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연결되려면 단순한 정신질환이 아니라 고의가 조각되는 심신상실 정도의 특수한 상황을 요건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신질환’을 ‘심신상실’로 개정하였다고 한다.; 임동섭, 현장에서 활용하는 손해사정실무(제3보험편), 보험연수원, 2015, 408면.

17) 서울지법 2003. 7. 1. 선고 2002가단134724 판결.

18) 가령 알코올에 의해 병적인 명정상태가 아니라 일시적인 명정상태에서도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16043 판결.

19) 고의가 없는 무의식의 자살을 ‘형용모순(Contradictio in adjecto)’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협이며, 일부 약관에서 “정신이상 여부를 묻지 않고” 자살한 경우를 면책사유로 정한 경우에 대다수의 법원은 그 효력을 인정하나 일부 법원은 피보험자가 자신의 행위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도 인지할 수 없을 정도로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는 ‘자살’ 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 특히 뉴욕주 보험감독청은 “정신이상 여부를 묻지 않고” 라는 문언을 약관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²⁰⁾

3. 손해보험사 판매 장기손해보험약관상 ‘정신질환’ 면책약관의 효력

개정 전 손해보험의 ‘장기손해보험표준약관’ 에서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었던 ‘자사(自死)’ 의 대표적 사례인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으로 자신을 해친 경우” 조항의 효력과 관련하여 그 동안 손해사정 실무에서 다툼이 많았다.

이와 관련해 최근 대법원에서는 해당 약관 조항의 효력을 인정한 판결들을 계속해서 선고하고 있다.

(1) 대법원의 태도(2015. 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

손해보험사인 동부화재에 상해보험을 가입한 피보험자가 이후 정신질환(정신분열병)으로 계속 치료를 받던 중 2012년에 산에서 소나무 가지에 나일론 끈을 묶어 목을 매어 사망한 사안에 대해 망인의 사망은 고의사고인 자살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면서도 다만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책사유(피보험자의 고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심신상실,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상해 등) 중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을 피보험자의 고의나 자살과 별도의 독립된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면책사유를 둔 취지가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으로 인식능력이나 판단능력이 약화되어 상해의 위험이 현저히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손해는 보험보호의 대상으로 배제하려는 데에 있고 보험에서

20) Greider & Beadles, Law and The Life Insurance Contract, 4thed., IRWIN, 1979, pp.549-551.

인수하는 위험은 보험상품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 있는 것이어서 이러한 면책 사유를 규정한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밑줄 필자)고 보았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에 의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동 면책사유에 의하여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면제된다고 판시하면서 해당 면책약관의 효력을 인정하였다.

동 판결 이후로 해당 정신질환 면책약관 규정의 효력과 관련해서는 모두 유효하다고 판시하고 있다.²¹⁾

(2) 판단²²⁾

1) 상법 규정 위반

상법 제732조의 2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상법 제65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가 아닌 한 보험자로 하여금 보험금지급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동 약관의 규정과 같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까지도 무조건적으로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한다면 이는 고의가 아닌 사고에 대해서도 모두 면책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이는 동 상법 규정의 취지에 반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특히 대상판결은 대법원이 상해보험에 있어 기존의 음주운전면책약관과 안전띠 미착용 감액약관의 효력과 관련해 한정 무효를 선고한 것과 비교해보더라도 양립하기 어려운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판단된다.

21)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다217546 판결(메리츠화재 건으로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정신과 약을 다량으로 복용하여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사안),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34956 판결(현대해상 건으로 정신질환으로 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한 사안).

22) 조규성,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정신질환’ 면책조항의 효력에 관한 판례 고찰”, 법학연구 제56권 제4호, 부산대 법학연구소, 2015, 211~213면 참조.

2)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와 상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자살’을 면책사유로 규정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대법원이 일관되게 실시하고 있는 법리²³⁾이다. 그런데도 만약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해보험의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신질환에 의한 손해’의 경우에도 무조건적으로 보험자의 책임이 면책된다고 한다면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살한 경우에도 그 사망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무조건 보험자가 면책될 수밖에 없어 기존 대법원에서 견지해온 법리의 취지가 완전히 몰각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법리적으로 부당한 결론이 도출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3) 약관규제법 위반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정의의 요체라고 할 것인데 손해보험사에서 취급하는 ‘상해사망보험’과 생명보험사에서 취급하는 ‘생명보험’은 모두 사망사고를 보험사고로 하고 있는데도 이 경우 만일 망인이 생명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자살’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사고에 해당되고 더 나아가 가입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면 자살의 경위에 대해 따져볼 필요도 없이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도 단지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상해사망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해당 면책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부인하게 된다면 이는 동일한 상해보험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가입회사가 어디냐에 따라 자의적인 차별이 발생하게 되어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해당 면책약관은 피보험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자살’이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의 심신상실 및 정신질환으로 인한 손해를 면책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이는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서

23)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 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18929 판결 등 참조.

정하고 있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공정성을 잃은 조항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²⁴⁾

4. 합리적인 판단기준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²⁵⁾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性行),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그 기준을 개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판단기준은 군복무 중 자살한 경우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²⁶⁾에서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을 원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주요한 판단요소로는 ‘정신병의 증세’ 및 ‘동기의 유·무’, ‘자살의 태양’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²⁷⁾

물론 정신병의 증세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그 증세가 심한 경우에는 긍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계속적 정신장애의 존재가 중요한 징표가 될 수 있을 것이지만 정신병의 병력이 없는 경우에도 발작적 정신장애에 기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배제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아울러 자살의 동기가 있는 경우에는 피보

24) 필자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현실적으로 보험약관이 표준약관을 전제로 작성되는 점과 인가절차 등을 거쳐 그 내용이 여과되는 점과 이 사건 해당약관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상해”를 면책으로 한 것은 보험자의 상품정책에 따른 것으로 그것이 보험의 본질과 신의칙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함부로 무효로 되는 것은 가급적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도록 허용하여야 하는 보험정책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대의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다; 김선정,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에 기한 상해사고를 면책사유로 한 약관조항의 해석”, 월간 생명보험(Vol.438), 생명보험협회, 2015, 62-63면.

25)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2006. 4. 14. 선고 2005다70540, 70557 판결 등 참조.

26)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2205 판결.

27) 권영문,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자살과 보험자의 면책 여부”, 판례연구(제23집), 부산판례연구회, 2012, 805면.

험자에게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피보험자의 경제상황의 악화, 피보험자가 경영하는 회사의 상태의 악화 등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보험금을 취득시킨다는 동기가 존재하는지 여부, 피보험자 및 그 친족의 병고, 실직, 일이나 취학 등의 고민, 가정불화, 실연, 스캔들의 발각 등 고민의 유무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²⁸⁾

다만, 이와 관련해 ‘유서의 존재’ 나 ‘신변정리의 흔적’ 이 있는 등 각오하고 자살한 경우를 추인시킬 수 있는 사실의 존재는 피보험자에게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여지가 있었음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자살의 태양은 자살의 방법이 계획성을 가지는가에 대한 중요한 판단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²⁹⁾

V. 맺는 글

‘자살’의 경우는 면책이 타당하지만 ‘자사’의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자살’과 ‘자사’를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 현행 약관 규정인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대한 해석의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대체로 정신질환으로 장기간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라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정신병 등의 질환은 ‘자살’의 동기에 불과하고 의사결정 그 자체와 동기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결국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느냐를 판단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필자는 ‘의사능력이 결여된 것’과 동일한 의미로 이해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다양한 논의를 통해 손해사정실무에서 합리적인 판단기준이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28) 권영문, 위의 논문, 806면.

29) 권영문, 위의 논문, 806~807면.

<참고문헌>

- 권영문,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자살과 보험자의 면책 여부”, 판례연구(제23집), 부산판례연구회, 2012.
- 김광일, “장해감정의 실제적 문제들”, 신경정신의학(제32권 제2호), 대한신경정신의학회, 1993.
- 김선정,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에 기한 상해사고를 면책사유로 한 약관조항의 해석”, 월간 생명보험(Vol.438), 생명보험협회, 2015.
- 송달섭, “생명보험표준약관상의 자살면책조항에 관한 소고”, 기업법연구(제21권 제2호), 한국기업법학회, 2007.
- 유관우외 1, 조문별 인보험 약관해설, 도서출판 엘림지앤피, 2006.
- 유주선, “보험자의 면책과 생명보험표준약관상 자살부책조항”, 경영법률(제18권 제1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07.
- 임동섭, 현장에서 활용하는 손해사정실무(제3보험편), 보험연수원, 2015.
- 장덕조, 보험법(제2판), 법문사, 2015.
- 조규성,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정신질환’ 면책조항의 효력에 관한 판례 고찰”, 법학연구(제56권 제4호), 부산대 법학연구소, 2015.
- 한국사법행정학회, 주해민법(제3판), 2007.
- Greider & Beadles, Law and The Life Insurance Contract, 4thed., IRWIN, 1979.

Abstract

Generally, in a life insurance standard policy and sickness & accident insurance standard policy, there is an indemnification clause where an insurance company is not required to pay insurance proceeds in the case where an insured commits suicide.

However, there is an exception to the above where an insured commits suicide status that ‘the insured can not be a free decision-making, such as loss of physical and mental’ resulting from his mental illness.

In this paper, I examine about the meaning of status that ‘the insured can not be a free decision-making, such as loss of physical and mental’ through judicial precedent.

※ Key words : The Final Judgement, Insurer’s Exclusion(Exemption), an Accident Insurance, Suicide Exclusion Clause, Contingency, Insurance Policy, Mental Illness and Suicides, Loss of Physical and Mental